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량 제한 폐지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93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량 제한 폐지	3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 공급 추가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16.
3. 회 부 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탁,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 상호금융권의 여신에 대한 사업이용량 기준을 비교해 보면, 농협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은 비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준조합원 자격이 구역내로 제한됨.

반면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으며, 신탁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적용하고 준조합원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 수협은 준조합원 자격을 구역외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역시 조합장이 인정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사업을 수행할 때 생활용품의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판매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함.

2. 주요내용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에 대해선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식품을 비롯한 생활필수 상품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8제2호).

Ⅲ. 검토의견

1.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량 제한 폐지

개정안은 조합의 신용사업(법 제5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비조합원 이용 제한의 예외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가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 ----- ----- ----- ---. ----- ----- -----제3호가 목·나목·마목-----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7조 및 조합정관례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법률에서 열거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관에서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이와 같이 이용이 제한되는 사업에는 신용사업의 핵심 영역인 예금과 적금의 수납 및 자금 대출사업이 포함되어 있음.²⁾

그런데 신용사업의 비조합원 이용량 규제로 인하여, 조합원의 이용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조합의 경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신용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신규 대출 및 공공기관 여유자금 유치 등을 통한 조합의 잠재적인 수익 확대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비조합원의 여신사업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25년 말 기준 전국 1,110개 지역 농축협 중 508개(45.7%) 조합에서 비조합원 사업이용비율이 4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여신 추진에 일정 부분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현행법상 신용사업 중 비조합원 이용량 제한을 두지 않는 사업으로는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제3호마목),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사목), 수입인지·복권·상품권의 판매대행(아목)이 있음.

[비조합원 여신사업이용 비율]

비조합원 여신사업이용량	45% 이상	40% 이상	40% 미만
농축협 수	508개	286개	316개

자료: 농협중앙회

이에 개정안은 예적금 수납(법 제5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자금 대출 업무(나목)를 비조합원 이용 제한 사업의 예외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조합원 기반이 축소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조합 신용사업의 성장 여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지난 10년간 농협 조합원수는 '14년 235만명에서 '24년 20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신용사업의 주된 고객 기반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확대할 경우 조합원 감소로 인한 잠재적 수요 위축을 보완하고 수익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둘째, 신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익이 확대되는 경우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현행 조합정관례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3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

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함.

내부규정(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서는 그 비율을 매출총이익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출자금은 조합상호지원을 통해 회원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음.

아울러 최근('26.2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조합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³⁾

실제 신용사업 비중이 높은 도시농협은 '24년말 기준 도농상생기금으로 7,988억원을 조성하여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손실보전 등을 지원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의 신용사업 활성화가 재원 확대를 통해 농협의 농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3)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②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첫째, 개정안은 상호금융 본래의 취지와 민간 금융사업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호금융은 조합원이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현행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조합원 이용량 제한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여신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이러한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역조합에 대해 법인세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⁴⁾ 신용사업이 비조합원까지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경우 민간 금융사업자와의 공정경쟁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둘째,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량 제한 폐지가 지역조합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22~’25년 농축협의 연체율과 연체금액을 살펴보면, ‘22년 1.2%였던 연체율은 ’25년 4.6%로, 연체금액은 약 4조원에서 약 17조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됨.

[지역농축협 연체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농축협	연체율	1.21	2.73	4.03	4.61
	연체금액	40,819	94,688	143,466	171,606

자료: 농협자산관리회사

특히 신분별로 보면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연체율은 각각 1.86%, 3.94%인 반면 비조합원의 연체율은 7.26%로,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연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분별 연체율 현황(‘25.6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합계
농축협	연체율	1.86%	3.94%	7.26%	4.88%
	연체금액	15,182	50,690	112,336	178,409

자료: 김선교의원실 제공 농협중앙회 자료

이에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량 제한을 폐지할 경우 연체 위험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조합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타 상호금융업권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수협과 신협의 경우 예적금 수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되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이용량이 전체 사업량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협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보이나,

농협의 경우 준조합원의 가입 구역이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으로 제한되는 반면, 수협은 전국 단위로, 신협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준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여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⁵⁾

[상호금융업권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현황]

구 분	농협	수협	신협
수신 사업	당해연도 사업량의 1/2	규제 없음	
여신 사업		당해연도 사업량의 1/3	
비 고	사업권역 시군구로 한정	전국 단위 준조합원 인정	광역 단위 준조합원 인정

이에 타 입법례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신과 여신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상호금융의 수익 구조가 본질적으로 여신을 통한 이자수익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요컨대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합의 신용사업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기반 확보 및 농협의 농업인 지원 기능 강화 가능성과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상호금융의 목적 및 지역조합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5.3월부터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 '상호금융 건전성 개선 TF'를 통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공동대출 규제 강화 등 건전성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으로, 조합의 건전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이에 농협도 준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국회입법조사처, 농협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2025.3.18.)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 공급 추가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생활 물자의 공급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12조의8(사업) ----- ----- ----- -----.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1. (현행과 같음)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 <u>보급</u>	2. ----- ----- <u>보급과 생활</u> <u>물자의 공급</u>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3. ~ 5. (현행과 같음)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은 조합,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

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임.⁶⁾

조공법인은 2025년 말 기준 원예사업 67개소, 양곡사업 51개소, 통합사업(양곡+원예) 5개소, 축산사업 8개소, 가공사업 5개소 등 총 1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5년말 기준 법인별 평균손익은 4억원 수준임.

[조합공동사업법인 현황('25년말)]

사업유형	법인수	참여 조합 등	경영현황(억원)			
			사업실적	평균실적	총손익	평균손익
원예	67	511	40,981	612	111	2
양곡	51	287	17,062	335	394	8
통합	5	29	3,430	686	29	6
축산	8	56	3,616	452	28	4
가공	5	27	1,823	365	28	6
합계	136	910	66,912	492	590	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상 조공법인은 농축산물 유통·판매·가공사업은 수행할 수 있지만, 하나로마트를 통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지역조합 등과 달리 생필품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판매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조공법인의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의 공급'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6)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7) 농민신문,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2026.1.16.

개정안은 현행법 제112조의8제2호에서 규정하는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에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문언상 ‘회원을 위한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급’은 같은 조 제1호(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에 따라 현행법상으로도 수행이 가능한 점과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⁸⁾을 고려할 때, 하나로마트와 같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자 공급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조공법인의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24년말 기준 조공법인 132개소 중 99개소(75%)가 당기순이익 3억원 미만이고 적자법인도 24개소(18%)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판매사업 범위의 확대를 통해 조공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생활물자 공급’ 사업은 조공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조공법인은 영세한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규모화·전문화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축

8) 주요내용: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식품을 비롯한 생활필수 상품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8제2호).

산물의 유통·판매·가공 등 농업 분야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조공법인의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하는 경우 농업 관련 경제사업의 범위를 넘어 일반 소비자 유통 분야까지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조공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현행법상 지역농협 등이 생활물자 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⁹⁾ 비조합원도 해당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임.¹⁰⁾

둘째,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사업을 허용할 경우 현재 지역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의 경업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¹¹⁾

9)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10)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식품부고시)」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제출의견

‘26년 1월 기준 지역농축협(2,195개소)과 농협경제지주(60개소)는 전국 2,255개소의 하나로마트를 운영 중임.

그런데 조공법인이 생활물자 공급 시 경쟁심화에 따라 기존 하나로마트 매출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조공법인의 사업에 생활물자 공급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공법인 수익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이익 증진 가능성과 조공법인의 설립 목적, 기존 지역농협 사업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